

의안번호	2215950
의 퇴 인	김도읍 의원
회 답 일	2026. 1. 21.
추계번호	25F0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99조의16 신설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 례)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9조의16 신설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 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이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이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 단,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이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

하나,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가족친화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게 우대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기업 인센티브: 기업규모별 국가 및 지자체, 금융기타 기관이 제공하는 우대혜택
 - 근로자 인센티브: 지자체는 관람료 등 할인과 한국잡월드는 체험료 등 면제혜택
- 2025년 기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6,971개사
 - 대기업 12.4%, 중소기업 70.8%, 공공기관 16.8%로 구성됨

[표 1]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현황: 2016~2025

(단위: 개)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연도별 누적 합계
2025	865	4,934	1,172	6,971
2024	784	4,552	1,166	6,502
2023	668	4,110	1,133	5,911
2022	591	3,706	1,118	5,415
2021	520	3,317	1,081	4,918
2020	456	2,839	1,045	4,340
2019	408	2,445	980	3,833
2018	364	2,028	936	3,328
2017	335	1,596	871	2,802
2016	285	983	560	1,828

자료: www.ffsb.kr '가족친화지원사업' 참조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부 근로보호 및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최소 15가지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 원까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자녀보육비 월 20만 원 이내와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는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 비과세
 - 2019~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른 출산·보육수당 및 그 밖의 비과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23.12.31. 저출산대응을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및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 2024.12.31. 기업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비과세로 신설

[표 2] 출산·보육수당 및 그 밖의 비과세 감면실적: 2020~2024

(단위: 백만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산·보육수당	335,689	328,019	320,374	320,734	341,435
그 밖의 비과세 ¹⁾	620,424	691,245	728,115	774,786	1,054,003
합계	956,113	1,019,264	1,048,489	1,095,520	1,395,438

주: 1) 연구활동비, 국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을 제외한 근로소득 비과세 합계
자료: 국세통계포털 각 신고연도 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